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9년 11월 12일
- 나. 제출자: 윤유선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19. 11. 2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유선 의원)

□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에게 독서문화진흥 수립·시행 의무 부여(안 제2조)
- 나.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다. 지역의 독서진흥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등(안 제4조)
- 라. 매년 독서의 달 지정·운영(안 제5조)
- 마. 도서관,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 바.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안 제7조)
- 사.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19. 11. 13. ~ 11. 18.)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제정 취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국가의 지식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중장기 계획인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시행하였음.
- 본 조례안은 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독서를 통한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민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함
(안 제2조)

-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의 연도별 수립·시행(안 제3조)
-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예산 지원(안 제4조)
 - 독서환경 개선
 - 독서아카데미, 동아리 리더 연수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운동
 -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 관련 발표회 등 독서행사
- 독서의 달 운영(안 제5조)
-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추진을 위한 도서관, 지역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안 제6조)
-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근거 마련(안 제7조)
- 독서문화 진흥 공적자에 대한 표창 수여나 포상 가능(안 제8조)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독서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이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보조금 지출시에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이므로
- 독서문화 진흥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시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들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公款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